



■ 2009년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인사말

아이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안정책연구소장 김길배

존 경하는 내외귀빈, 경찰관,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그간 저희 치안정책연구소는 학술세미나를 통해 경찰행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찰 지식창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제28회 학술세미나에서는 ‘아동성폭행 예방과 경찰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대상 성범죄의 대응방안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의견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장래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은 바로 우리의 미래이며, 이들을 각종 범죄와 사회문제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비단 경찰 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막중한 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경찰은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특히 아동이나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범죄로부터 피해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5세 이하 어린이의 성폭력 피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2천6백여 명의 어린이가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공분을 자아냈던 소위 ‘조두순 사건’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런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흥분하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오늘 제28회 학술세미나는 바로 이런 문제인식에 기

초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경찰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논의해 보려는 것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타 범죄와 달리 범죄자들이 높은 재범률을 보이며, 이들의 성범죄가 일종의 정신장애 현상으로 진단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적발과 처벌 중심의 경찰활동 만으로는 아동 성범죄의 근절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여, 제2·제3의 ‘조두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먼저, 아동성범죄에 대해, 범죄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왜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하는지? 피해아동들은 범죄로 인해 어떤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아동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 전 분야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아동성범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9년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요약

아동성폭행 예방과 경찰의 대응방안

이수정 교수/심리학박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들어가며

조두순사건의 등장으로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현재의 형량이 적정인가에 대한 시비가 한동안 우리 사회를 달구었다. 성폭력범죄, 그것도 아동을 대상으로 끔찍한 피해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분개하였고,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음주가 감경요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조두순의 사건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최근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해자 가족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검찰이 피해자 아버지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하고 열람·등사 신청 ‘포기 각서’까지 쓰게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반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음에도 중요 동영상 증거를 항소심 선고 전날 뒤늦게 제출해 피해자가 불필요한 법정 증언을 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입혔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두순 사건은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전반에 산재해 있던 수많은 문제점을 한꺼번에 부각시켜 온 국민을 연일 비분강개하게 만들고 있다. 놀라운 일은 단 한건의 사건이 지닌 파장력인데, 그 힘이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 막강했다는 것과 그동안 말없이 지내왔던 국민들의 의견이 이리도 단호하고 절대적이어서 모든 공기관의 관행을 뒤흔들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동성범죄 처리절차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범죄 처리절차의 허점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개선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한 영역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들을 은폐하는 데에 급급하였으며, 사건화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성인 대상 사건들에 밀려 별다른 주의를 끌지 못하였다. 법원은 최근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구속적부심 요건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 역시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불구속율 뿐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율 역시 증가추세에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불기소율은 2003년도 19.76%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26.56%까지 늘어났다. 더욱이 판결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확정율이 매우 낮아서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형사절차의 현주소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처를 혼돈에 빠지도록 만들어, 검거율은 어느 범죄 못지않게 높는데 반해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아동 대상 성범죄는 더욱 만연되는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이 같은 형사절차의 결과, 사법제도에 대한 극단적 불신은 범죄피해자 통계지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이 집행한 피해자 조사에 의하면, 성폭행 피해자의

93%가 피해사실을 사법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신고를 해도 가해자를 구속조차 하지 않는 사법체제에 대해 국민의 무력감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사법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과거와는 다르게 중한 형벌을 선고하는 판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매번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절대적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조사절차는 과거와 같이 경찰의 경우 여청과 원스탑에서의 조사, 용의자 검거 시 형사과에서의 대질, 그리고 검찰에서의 재조사, 마지막으로 공판정에서의 재진술 등 반복조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형사사법기관으로 이첩되기 전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 등에서의 진술까지를 포함한다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적어도 세 번 이상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반복조사가 성폭력 피해로 인해 정신적으로 취약해져 있는 아동의 심리상태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허나 현재 정부부처는 아동 피해자에 대한 조사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을 인지한 채,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담당부서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인데, 이 같은 공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사법절차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자신의 업무 중 일부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과감한 희생이 필요한 바, 이는 모두 성폭력에 이미 처참하게 노출된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명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내 아이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고수해야 하는 권한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글을 마치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밤길을 배회하며 도시의 불빛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곳일 것이다. 시민들은 덕수궁을 마주하며 광화문광장에서 스노보드 타기를 즐기기도 내 아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하기를 희망한다. 밤늦은 길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귀가하며,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부와 사법기관이 무고한 내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법기관의 실무자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임을 계속 입증해야 하는 무력감과 피해 사실조차 의심받게 되는 끔찍한 현실은 당사자를 파멸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수많은 소시민의 애국심을 짓밟는 일이다. 변해야 한다. 이는 아이들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제이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유동열 연구관
 편집위원 : 김학신, 조은순, 이형범, 권태형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285-2616 (경비) 61-5207
 ● e-mail: webmaster@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피의자 공개수사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이형범 경찰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들어가며

피의자 공개수사는 피의사실, 신상 등이 일반에게 알려지므로 헌법상 프라이버시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침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괴, 연쇄살인, 총기 등을 소지하고 도주 중인 범죄자의 추적 등 긴박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수사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 하에서도 피의자의 신상에 대해 공개하여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제한한다면 무고한 시민의 피해 등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경찰에서 행하는 피의자 공개수사의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현행 피의자 공개수사의 근거와 한계

피의자 공개수사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침해하게 된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헌법 제37조 제2항)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법률적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범죄수사규칙, 지명수배규칙 등 행정규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범죄수사규칙 제178조, 지명수배규칙 제9조

피의자의 발견, 검거 및 범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피의자의 성명 등 신상에 대해 일반에게 널리 알려 적극적으로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개수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공개수배 대상, 수사사건 언론공개 기준 및 절차, 공개금지 사

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수사 등에 있어서 절차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공개수사 대상(제86조 제1항)

살인·강간·강도 등 흉악범으로서 그 죄증이 명백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공개수배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공개수배를 할 수 있다.

• 수사사건 언론공개 기준(제83조 제2항)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①중요범인 검거 및 참고인·증거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②국민의혹 또는 불안해소, 유사범죄예방에 특히 필요한 경우 ③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 언론공개절차(제82조)

수사사건 공판 전에 언론에 공개할 경우 홍보책임자가 공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홍보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개금지(제84조)

①범죄와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 ②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 ③범죄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 ④기타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된 사항은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

피의자 공개수사의 형법적 문제

경찰에서 공개수배, 중간수사브리핑, 수사결과발표 등 수사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당하게 된다. 우리 형법 제126조는 수사관계자의 피의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서 보장하려고 하는 피의자의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 등 또 다른 헌법적 요청과 범인의 조기검거, 재범방지, 사회적 반향이 큰 범죄에 대한 국민이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사안은 다음과 같다.

- ㄱ. 긴급피난
- ㄴ. 피해자의 승낙
- ㄷ. 형소법상 수색에 의한 공개수사의 위법성조각
- 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 ㅁ. 알 권리에 의한 위법성조각

덧붙여 대법원 관례에서 나타난 위법성조각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ㄱ. 사실의 공익성
- ㄴ. 사실의 공공성
- ㄷ. 공표의 필요성
- ㄹ. 사실의 객관성, 정확성
- ㅁ. 공표·절차와 형식의 적절성
- ㅂ. 표현방법의 적정성
- ㅇ. 혐의의 비례원칙

일본, 독일의 피의자 공개수사

일본의 피의자 공개수사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피의자 공개수사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없으며 일본경찰청에서는 『피의자 공개수사에 관한 예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공개수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개수사의 대상, 절차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공개수사의 대상

- 죄종
 - ㄱ. 흉악범죄
 - ㄴ. 사회적 위험성 또는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 ㄷ. 재산범죄 중, 악질 중요범죄
 - ㄹ. 극좌폭력집단 등 반사회성이 강한 집단의 범죄로 조기검거필요가 있는 것
- 지명수배피의자
- 원칙적으로 성년 피의자

● 공개수사의 시기, 내용

피의자의 추적수사의 상황, 범죄반복의 가능성, 수사상의 지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효과적으로 시기를 선정하여야 하며 정확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 피의자의 성명, 연령, 범죄사실 개요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필요최소한도로 공개해야 한다.

독일의 수배장 제도(독일 형소법 제131조)

독일에서는 공개수사와 유사한 수배장 제도를 독일 형소법 제131조에 두고 있다. 피의자가 도주 중이거나 은신하고 있는 경우 검사 또는 판사는 구속영장 또는 시설수용영장에 의하여 수배장을 발부할 수 있다(제1항).

일단 체포된 자가 도주하거나 감시를 벗어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나 시설수용영장 없이 수배장에 의한 추적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수배장을 발부할 수 있다(제2항).

수배장에는 피추적자를 특정하여 가능한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야 하고 혐의사실행위와 범행일시와 장소도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제3항).

맺은 말

공개수사는 피의자의 명예, 초상권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침해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라고도 할 수 있다.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형소법 제199조 단서), 공개수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상 규정은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공개수사 및 지명수배에 관한 형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수사목적(공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본경찰청의 『피의자공개수사에 관한 예규』와 같이 공개수사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PSI](#)

■ 안보현안

북한 급변사태와 경찰의 대응

유 동 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북한 급변사태 연구의 중요성

2008년 8월경 부터 본격화된 북한 김정일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북한급변사태의 발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학계에서도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물론 김정일의 활발한 공개활동 재개로 건강이상설이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지만, 아직도 건강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누적된 경제적 침체로 사회적 불안정, 후계구도 문제 등 북한체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급변사태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이는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위협요소이며 한편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여는 중요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태라고 의미 지을 수 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한 경찰차원의 구체화된 대책이나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국내에서 발생될 국가위해요소나 북한내의 정치사회 불안정으로 인한 치안 혼란사태는 우리의 안보와 평화적인 남북통합에 부정적 변수가 작용되는바, 이에 대한 국가적차원의 대비책 마련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하다. 특히 국내와 북한의 치안위해상황 발생은 명확하게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경찰차원의 대책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

일반적으로 급변사태(急變事態, situation of sudden change 또는 contingency)를 사전적으로 정

의하면, 『갑자기 달라진 상태』, 『별안간 일어난 변고(變故)』를 의미한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이들 정의는 연구자의 시각이나 연구대상과 연구범위 등에 따른 차이성을 지니고 있어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총체적으로 담기엔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북한의 급변사태(急變事態)를 『북한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일 신변에 유고(有故) 상태가 발생하여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규정한다. 현재 북한체제는 김정일이 권력기관인 당(조선노동당), 정(내각), 군(국방위 및 조선인민군) 및 북한의 모든 영역을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의미 있는 급변사태란 바로 김정일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상황 즉 김정일의 유고(有故)로 집약된다 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의 유형

김정일의 유고 유형		주요 내용
김정일 사망	자연사	● 정상적 상황에서 사망
	타 살	● 내부자에 의한 암살 ● 주민폭동, 쿠데타에 의한 타살
	자 살	● 권력실각에 의한 동요 자살
김정일 와 병	혼수 상태	● 의식불명, 정상적 직무 불가 ● 위기관리세력 잠정대리통치
김정일 구 금	정치적 식물 인간	● 외압에 의한 권력이양 ● 쿠데타로 권력축출 구금 ● 주민봉기로 권력축출체포 ● 김정일의 정치적 영향력 무
김정일 망 명	정치적 식물 인간	● 권력실각 후 해외도피, 망명 ● 망명정부, 권력복귀 시도 ● 권력복귀 불가

북한 급변사태시 경찰차원의 대책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국내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대표적 국가위해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이념갈등(진보-보수, 좌-우) 세력간 집단충돌
- 휴전선 무력화, 월북시도, 남북자유왕래 선언
- 탈북난민수용소 반대, 전원 자유 수용 주장
- 탈북난민 수용소 점거시도, 위장난민, 폭동
- 탈북자에 대한 테러 및 역테러
- 북한정권 무력접수, 북진통일 주장
- 북한정권타도 행동대, 월북시도
- 사회혼란을 틈탄 친북좌익세력 자체 테러
- 정권퇴진 주장, 강력한 반공민주정부 수립 공세
- 정국혼란에 편승한 범죄 발호
- 북한주민 경제지원 투쟁
- 북한임시정권 지지, 국내외 여론조성 활동
- 국내혼란을 틈탄 산업스파이 행위 등 경제전
- 범죄집단 무장화 및 폭도화

국가위해요소의 제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지침과 대응체계 구축의 연장선에서 경찰의 기본 대응방침과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경찰청 차원의 대응목표는 ▶ 국가위해요소로부터 치안질서 수호 ▶ 국가핵심기반 및 국가안보의 우선적 확보 ▶ 치안질서 및 사회안정위해 기도 조기차단 ▶ 위해사태 제어 실패시, 조속한 국가기능 회복을 위한 치안유지책 강구 등이 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청차원의 기본방침으로는 아래와 같이 설정해야 한다. ▶ 경찰청 국가위해요인 대응시스템 구축과 관리 : 현재의 경찰청 상황실을 확대,개편하여 (가칭) 「국가위해대응 대책본부」 설치운영하고 지방경찰청, 경찰서 단위로 통합적 관리 ▶ 국가위해요인의 사전색출 및 예방 활동 강화 : 급변사태시 내용별, 대상별 치안위해요소 파악, 사전감지시 경보발령, 사전예방활동 강화 ▶ 국가위해사태에 대한 신속한 진압대책 : 불법활동, 폭력시위 및 폭동은 초기단계 신속제압, 진압작전시 안전관리 강화, 사태 악화방지 ▶ 진압작전 실패시 후속 진압작전 신속전개, 치안기능 조기회복

셋째, 북한 급변사태시 발생가능한 국내에서의 국

가위해요소와 치안저해요소를 유형별, 사례별로 세분화하여, 점검목록과 대응매뉴얼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넷째, 북한급변사태시 완전한 남북통일 이전까지 과도기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안차원의 제 문제와 사안을 기능별, 내용별, 대상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점검목록(Check List)을 작성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국내 국가위해요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안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는 보안경찰이 정부수립 이후 60여년이 넘도록 국가안보 경찰로서의 축적한 역량(Know-How)을 국가위기기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안경찰차원의 대응책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책제언

첫째, 북한 급변사태시 경찰의 대응방안이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속성상 남북관계의 영향을 감안하여 연구 자체가 보안에 부처지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나, 당국은 관련분야 자료를 정부부서 전문연구가들에게 과감하게 제공하여 본 연구의 결과 내용이 더욱 풍부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둘째, 북한급변사태시 경찰의 대응방안 구축에 대비하여, 국내 경찰관 자료, 범죄통계, 통합관련자료 등 각종 치안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급변사태에 대응한 경찰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내 한시적인 특별팀(Task Force)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팀에는 경찰청 각 기능별로 우수인력을 차출하고, 경찰대학 교수,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및 민간전문가(현 경찰청 보안정책자문위원 활용) 등을 참여시켜 기존 대비책을 점검하고 수정, 발전시켜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여 다가올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PSI](#)

■ 현장경찰관의 목소리

‘DNA법’ 입법예고와 관련 경찰의 유전자 감식정보 관리에 대한 의견

경감 조대희
부산지방경찰청 강서경찰서 수사과

들 어 가 기

지난 11. 16일 부산진경찰서에서는 실종되었던 아들을 21년만에 어머니와 눈물의 재회를 하는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다. 이 모자(母子)가 재회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은 어머니의 타액에서 채취한 DNA였다.

공지의 사실처럼 되었지만 요즘 범죄현장에서는 어진간해서는 지문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범인이 DNA흔적까지 지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DNA 분석으로 해결된 사건들을 언론 등을 통해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무동기 범죄의 증가와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DNA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자는데 목소리가 한층 높아진 상태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지난 10. 27에는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DNA법)’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시행이전에 이미 찬반 논란이 뜨겁게 진행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도 논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번 법률안 시행과 관련하여 경찰의 유전자 정보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보았다.

‘DNA 법’ 법률안의 주요 내용

- DNA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의 관장(안 제4조)
형확정자 DB는 대검찰청, 구속피의자 및 범행현장 DB는 경찰청에서 관리
- 적용대상 범죄(안 제5조)
살인·강도·약취·유인·방화·상습폭력·아동성폭력 등 재

범가능성이 높거나 강력범죄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12개 유형의 범죄

• 적용대상자(안 제5조 및 제6조)

적용대상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한 형의 선고·보호관찰명령·치료감호선고·보호처분결정 확정자 등

• DNA 감식시료 채취영장 (안 제8조)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채취, 대상자 동의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채취가능

• DNA 감식시료 채취방법 (안 제9조)

구강점막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 DNA 정보의 삭제 (안 제13조)

수형인은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 확정시, 구속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 수사 중 죄명 변경, 법원에서 무죄·면소 등의 판결 확정시,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업무목적외 사용금지 및 처벌(안 제15조 및 제17조)

행위태양	법정형
DNA 정보 허위 작성·변개한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감식자료 인멸·은닉 등 효용을 해한 경우	5년이하 징역, 700만원이하 벌금
업무목적외 사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

‘DNA 법’ 법률안 검토

DNA 검사에 의한 수사의 성질과 구비요건

대상자로부터 DNA를 채취하는 수사방법이 강제수사로 파악할 것인가 임의수사로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입장은 달라 질수 있으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감수하여야 하고,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관한 고유한 정보가 DNA를 통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로 보는 관점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고, 이렇게 볼 경우 DNA의 채취와 분석은 법률의 근거, 법관의 영장 등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필요성, 비례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 하며, 그 침해의 정도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DNA정보에 대한 私益(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公益(신속한 증거수집으로 인한 범죄진압 및 범죄예방 효과 등)과 비교 형량해 보았을 때 후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큰 경우일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DNA 정보 수집에 대한 의견

DNA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질병 등 범죄여부와 무관한 정보의 경우는 같은 DNA에서 분석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개인 식별을 위한 DNA 검사만으로 바로 질병 등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의 우려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DNA 수집 및 관리과정의 엄격한 통제장치를 도입하고 DNA 정보의 수사상 활용 역시 엄격한 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면, 필요한 분석이 끝나면 DNA를 조기에 폐기시킴으로써 장기보관으로 인한 정보유출가능성을 최소화 한다면 반대론에서 제기 하는 문제점은 거의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통제방법으로는 우선 DNA분석의 신뢰성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첫째, DNA분석자료 채취, 보존, 운반 등 제반절차에 대한 엄격한 법적규율과 공정성확보가 필요하고, 둘째로 실험에서의 공정성과 윤리성이 엄격히 요구되며, 셋째로 DNA 분석과정에 대한 독립기관에 의한 감독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절차적으로 수사상 필요한 DNA분석은 범행현장의 유류물과 범죄혐의자의 DNA 정보동일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초과하는 DNA분

석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의견

DNA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단순히 DNA 검사방식의 수사기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DNA 검사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DNA형의 대조를 위한 대조군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DNA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고, 유용하게 기능하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규모의 DNA정보 수집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건마다 범죄혐의자에 대한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관철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결국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을 두어 통제하는 방법만이 실현가능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며, 범죄와 무관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DNA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수록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등 범죄와 관련된 자 들을 대상으로 DNA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수록은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DNA정보수집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우려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DNA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데,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통합정보처리능력이 향상되어 여러 곳에 특정 정보주체의 다양한 정보들을 용이하게 수집·통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정보주체들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서 어느 정보 노출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자기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제 또는 소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박탈 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보호장치로서 DNA정보유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비밀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DNA정보를 저장, 관리할 때 정보의 주체인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거나

암호화 하여 저장, 관리하거나, DNA시료제공자의 열람권을 인정하여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보장하는 방안,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안시스템 개발,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의 비밀유지, DNA 정보 전송시 암호화방안, DNA 관리주체는 수사기관과 독립된 별도의 기관이 되도록 하여, 적용운용여부를 감독하는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공정한 통제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 무 리

이미 영국에서는 1995년 세계 최초로 유전자 자료은행(National Intelligent DNA Data Bank)을 설립하여 과거의 미해결 사건을 해결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미국 FBI 내에 1998년 국가유전자정보시스템(National DNA Index System)을 설립하게 되었고 2005년까지 76개 국가가 이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었거나 검토를 끝낸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인권침해시비 및 관리운영주체간의 다툼으로 지지부진하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06년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고, 금년도에 “디엔에이 신원확인 및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으로 입법 예고되었다

관리주체가 검찰과 경찰로 양분화한 것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양기관 유전자 정보의 관리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법률안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무조건 걱정만 하거나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기 보다는 법률, 시스템, 감시장치 등을 시행하고 운영하면서 실험 등을 통해 문제점을 줄여나가고 시민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법률안에 대해 무조건 적으로 인권침해적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여론을 호도하는 주장은 분명히 재고할 여지가 있으며,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는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수

사의 효율성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다. 검찰, 경찰, 학계, 언론, 시민사회가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음으로 범죄수사에서 DNA 감식이 필요성에 대한 수사관들의 자각이 필요하며, DNA분석관들에 의한 신감정기법의 지속적 개발과 검증, 전문성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감정사례를 공유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제도에 반영시키는 피드백 시스템의 완비가 필요할 것이다. [PSI](#)

치안정책 관련 연구수요 조사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치안정책과 관련된 연구수요를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립니다.

치안행정에 관한 이론 정립 및 다양하고 심도있는 치안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를 희망하는 주제를 자유로이 선정, 연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치안정책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webmaster@psi.go.kr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 제13호 당첨자 : 안재필

□ 전자우편주소

- 인터넷: webmaster@psi.go.kr
- 내부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권태형

□ 보내실 내용

- 이름,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2009년도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소장 김길배 치안감)는 2009년 11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아동성폭행 예방과 경찰의 대응방안’ 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서행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가 하였다.



세미나 주제발표와 관련 장석현 교수(순천향대학교), 정성희 논설위원(동아일보), 노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세광), 임호선 총경(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유지웅 박사(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아동성폭행의 예방 및 아동성폭행 범죄자의 검거 및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토론을 하였다.

이 세미나는 앞으로 아동성폭행범죄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와 아동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 시스템이 정착되어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고 더 이상 아동성폭행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협력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게 생각하게 한 자리였다.



2009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워크숍

2009년 12월 10일 - 11일간 충북 충주시 소재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치안정책연구소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연구소 발전방안과 연구능력함양을 위한 ‘2009년 정기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09년도에 수행한 책임연구과제 및 외부 위촉·용역 연구과제, 단기연구과제 등 각 연구실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010년 책임연구과제 연구 주제 방향 및 연구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2009년 4/4분기 안보정세 분석회의 개최

2009년 11월 16일 치안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4/4분기 안보정세 분석회의를 개최하였다. 경감 김용민(안보대책연구실)이 “국가종합 위기관리 시스템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위촉 · 용역연구과제 중간발표

2009년 10월 ~ 11월간 6회에 걸쳐 치안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전 연구관과 경찰청의 연구과제 관련부서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위촉 연구과제 및 용역(지정, 자유)과제 연구위원이 중간보고서 발표 후 연구주제 및 중점 연구 사항에 대하여 의견 교환 및 향후 연구방향을 심도 있게 토의하였다.



치안논총 제25집 배포

2009년 10월 1일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치안논총 제25집을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이번 치안논총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경희대 안경옥 교수), 외국의 집회·시위 관리시 물리력 사용에 관한 규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계명대 김택수, 이성용 교수), 노사 분류시 외국의 공권력 투입 기준에 관한 연구(관동대 이영남 교수), 국가간 치안경쟁력 비교를 위한 표준지표 연구(한남대 탁종연 교수)가 수록되었다.



연구관 동정

◆ 신입 별정직 · 계약직 연구관 3명 채용

경찰청은 2009년 12월 14일자로 치안정책연구소 별정직 연구관 1명과 계약직 연구관 2명을 신규 채

용하였다. 이번에 임용된 김학신 연구관(별정4급)은 범죄수사연구실, 김동혁 연구관(계약5호)은 정책기획연구실, 김남선 연구관(계약5호)은 교통대책연구실로 배치되었다.

◆ 생활안전대책실 연구관 주취자 처리 업무 체험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전 연구관(여태수, 유지웅, 김학신)은 2009년 10월 16일 18:00-23:00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서 이호용 교수(단국대학교)의 위촉연구과제 수행관련 일선 지구대의 주취자 처리 업무를 직접 체험하였고,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생활안전분야 연구관련 의견을 청취하였다.

◆ 권태형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2009년 12월 5일 충북 서산시 원체스터리조트에서 열린 한국IT정책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SMS를 이용한 경찰행정서비스 향상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상수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2009년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년도 청렴교육전문가 경찰분야 과정』에서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찰 신뢰제고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 유동열 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2009년 12월 7일-9일 일본국 세계정경조사연구회(내각정보조사실 산하 안보연구기관) 초청으로 동경 ANA 인터콘티넨탈호텔 세미나실에서 ‘북한의 대남·대일공작의 실태’란 주제를 발표하였다. 발표 후 참석한 일본 북한정보관계자들과 주제에 관련한 토론을 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미나미(南隆) 일본 내각심의관(정보담당)도 참석하였다.

◆ 김용민 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2009년 11월 17일 경찰대학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 이기수 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지난 11월 23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선진 수사 제도 연구회」 주제 학술세미나에서 “호송제도 비교법적 연구”라는 주제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서	담당 업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소내 서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섭외 업무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